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8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II . 검토의견	2
1.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	2

I. 개 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8.
- (3) 회 부 일 : 2026. 4.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II. 검토의견

1.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	☐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
○ 적용대상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 적용대상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u>수출용 중고품*</u> * <u>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해서만 적용</u>
○ 적용기한 - 2028. 12. 31.	○ 적용기한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3 - 중고자동차: 110분의10	○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중고자동차 및 <u>수출용 중고품</u> : 110분의10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적용례 -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박수영의원안 2026. 4. 8. 발의(의안번호 18181)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수출신고필증¹⁾이 확인되는 수출용 중고품으로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와 같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매출세액에서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입금액에 이미 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원용하여 해당 부분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특례라고 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매입세액 공제율 변천과정]

구분	1994년 ~2001년	2002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현재
재활용폐자원	10/110	8/108	6/106	6/106	5/105	3/103	3/103
중고자동차	10/110	10/110	10/110	9/109	9/109	9/109	10/110

□ 한편, 국내외 중고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30조원, 2025년에는 4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 한편, 리서치 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은 4,24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2028년까지 연평균 12.7% 성장해 6,852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음.²⁾

□ 이와 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개정안은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리커머스(Recommerce)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현재 중고 “자동차”에서 “중고품”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거래 사업자들이 중고품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가 중고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하나금융연구소, 「중고거래, AI가 올려주는 당신의 매너온도」, 2024.12.13.

둘째, 의류·전자기기 등 중고품 수출업자의 실질 매입원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가격 인하 여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음.

중고품 유통구조상 일반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현행 「부가가치세법」³⁾은 세금계산서 없는 취득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영세 중고사업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음.

개정안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세금계산서 없는 취득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고사업자는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므로 수출업자의 중고품 가격경쟁력이 상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⁴⁾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도입되는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지선·김진태, 2025.7.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중고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됨. 따라서 중고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중고품을 판매하려는 개인·사업자들도 점차 시장에서 이탈하게 됨. 따라서 중고거래 공급자의 시장 진입 또한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 제활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봄.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된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부여되므로 수출용으로 매입세액을 선(先) 공제받은 후 사후적으로 내수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 거래에 기반한 부당공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수출신고서 및 신고필증에는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와 금액을 외화로 기재하고 총 신고가격을 기재하는데, 이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정합성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어 수출신고필증만으로는 매입가액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특히 중고거래 과정에서 거래가격이 오히려 인상되는 일부 사치재 또는 희소성 있는 중고품 등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대비 수출 시 최종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차이가 많이 나타날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이 과도하게 나타날 우려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